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한신 위원

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!
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한신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「하수도법」 제65조제2항에 의거, 공공하수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 수입금의 예외적 용도로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

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환경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이에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.

아무쪼록 생활환경에서 접하는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!